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별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파 주 시 장

1. 위탁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 1)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 2)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다. 위탁시설 및 예산현황

기관명	주 소	사용면적(㎡)	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적용)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1층	362.16	2026년 기준 2,976백만원
파주시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2층	362.16	2026년 기준 433백만원

※ 사용면적은 층별 면적 기준이며, 2층 다목적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용 공간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필요 시 협의하여 사용

※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등 예산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센터별 위탁사무

-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준용 (위탁기간 중 최신 지침 적용)
- 2) 사업내용: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기관명	주요 위탁사무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관리 및 조기발견·사례관리·재활지원·치료비 지원 - 아동·청소년·청년 등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찾아가는 심리지원 - 재난심리지원업무,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 기타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파주시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중독자 관리 및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등

※ 세부 위탁사무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위·수탁 계약서에 따름

2. 신청자격

가. 신청분야

- 1) 신청분야는 센터별로 구분하며, 신청기관은 1개 또는 2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음
 - 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나)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2) 아래 신청기관 자격, 센터장(예정자) 자격 및 신청 제외대상은 신청분야별로 적용함

나. 신청기관 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내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1)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다. 센터장(예정자) 자격: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센터장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함 (붙임 제출서식 모음 중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라. 신청 제외대상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운영이 해지된 경우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벌(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대표자·시설장 포함)
 - 다)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 2) 신청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4) 주사무소 또는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 5) 그 밖에 수탁사무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조건

가.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호

- 1)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탁기관 소속 사업수행 인력의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센터장 제외)
- 2)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
- 3) 그 밖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따름

나. 민간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1)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직접 운영 및 재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 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시설공간은 해당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

1) 운영인력·사업계획·예산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안내」에 따라 수행

2)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

마. 계약이행 보증 및 보험 가입

1) 계약체결 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파주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이행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부담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4.(수) (17일간)

나.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4.(수) (3일간)

라. 접수장소: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 031-940-5464)

마. 접수방법

- 1)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2)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3) 접수는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바. 교 부 처: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 서식 파일 내려받기

5. 제출서류

가. 수 량: 신청분야별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2개 분야 신청 시 신청분야별로 각 10부 (총 20부) 제출

나. 규 격: A4 사이즈 1권 책자로 제본

※ 목차·쪽번호 명시, 좌 편철, 서식 번호 및 첨부서류 번호별 견출지 부착

※ 2개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분야별로 제출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제출 하여야 하며, 각 서식의 '신청분야란'에는 1개 분야만 표기함

다.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서식	부수	비 고
1	제출서류 표지	서식 1	1	
2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2	1	
3	서약서	서식 3	1	
4	민간위탁 사무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4	1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서식 5	1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6	1	
7	신청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서식 7	1	
8	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서식 8	1	
9	주요사업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서식 9	1	
10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10	1	5페이지 이내
11	사업계획서	서식 11	1	5개년 중장기 계획+1차년도 세부계획, 50페이지 이내
12	세입·세출예산서	서식 12	1	1차년도 상세, 자부담 연도별 계획 포함
13	인감신고서 (사용인감계)	서식 13	1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4	2	기관용, 센터장용
15	위임장	서식 15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6	첨부서류 아래 1)~10) 참조	-	각 1	제출서류(서식1~15) 뒤에 1)~10) 순서로 편철

라. 첨부서류

- 1) 기관(법인)의 정관(회칙 또는 규약) 사본 1부
 - 2) 기관(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
 - 3) 기관(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 4) 기관(법인)의 설립 인(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5) 법인결산서(최근 1년, 신설법인 제외) 1부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7) 자산현황 증빙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 8) 센터장(예정자) 자격(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9)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용역 및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탁자 선정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 10) 기타 증빙서류(지도·감독 처분결과 및 조치결과 공문(해당 시), 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등)
-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산현황(예금 잔액, 부채 등) 증빙은 기준일을 공고일 전일로 함
-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며, 심사용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휴대폰 번호 등 개인 민감정보를 삭제(마스킹) 후 제출

6.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 가. 선정방법: 「과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분야별로 심의·결정
- 1) 정량평가(30점, 소관부서 평가)와 정성평가(70점,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관을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신청분야별 수탁기관을 선정
 - 2) 정성평가 점수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3)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별 우선순위(①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②센터 위탁사무 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을 선정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 구성인원: 7명 이상 9명 이하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 2) 심사항목: 아래 “라.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름

다.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대면심의)

- 1)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법인) 현황 및 신청분야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 2)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발표용 PPT(15분 이내)는 심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통보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평 가
정량평가 (30점)	1. 공신력 및 재정능력	20	- 기관(법인)의 행정능력 및 해당분야 전문성, 자원동원 가능성 - 재정능력(기본재산, 재무건전성)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최근 2년), 파주시 위탁사무 수행결과(최근 3년, 해당 시))	소관부서
	2. 정신건강 및 공공보건사업 수행실적	10	-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중독관리사업 수행실적 - 기타 공공보건사업 참여실적	
정성평가 (70점)	3.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의 비전 및 목적,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 - 사업내용의 전문성, 연도별 목표 및 핵심과제의 적정성	심사위원
	4. 운영예산 및 조직·인력의 전문성	15	- 인건비·사업비 등 균형적인 예산 편성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 센터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5.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10	- 고용승계·유지,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 여부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 안전보건 확보 수준 등	
	6. 센터 위탁사무 수행능력 (발표·질의응답)	25	- 기관(법인)의 운영의지 및 신뢰성 - 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 신청분야 사업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	
합 계		100		

마. 심사일자: 2026. 11월 말 ~ 12월 초 (구체적인 일시 · 장소 별도 통보)

바. 선정발표: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통지 (시 홈페이지 공개)

7. 위·수탁 계약 체결

- 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지정된 기일에 파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수탁 계약서」,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로 정함
- 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적격점수(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

8. 기타사항

- 가. 서류접수 결과 신청분야별로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신청인 경우 해당 분야에 한하여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이후 1개 기관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심의를 실시하여 심의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함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부적격 처리
- 다.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신청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임
- 라. 심사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평가 관련자료 및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 하며, 신청기관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31-940-5464)으로 문의

붙임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신청서 등 제출서식 모음 1부. 끝.